특약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』 특약(구 하나은행)
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
4. 주요 변경내용 : 상품명 변경, 약관명에 구행명 삭제, 조항명 변경, 가입대상에 개인사업자 추가, 문구 변경(스마트뱅킹 -> 스마트폰뱅킹), 행명 변경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「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」 특약(구 하나은행)	「KEB하나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」 특약	상품명 변경 구행명 삭제
제 1 조 약관의 적용 "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「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」, 「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(구 하나은행)」을 적용합니다.	**제 1 조 적용범위** "KEB하나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"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「예금거래 기본약관」 및 「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」을 적용합니다.	조항명 변경 상품명 변경 구행명 삭제
제 2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퇴직공제금을 수령하는 실명의 개인으로 하며 1인1계좌로 합니다.	**제 2 조 가입대상**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퇴직공제금을 수령하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하며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	개인사업자 문구 추가
제 3 조 ~ 제 4 조 (생략)	**제 3 조 ~ 제 4 조** (좌동)	
제 5 조 수수료 우대 (생략) 1. 전자금융(인터넷/텔레뱅킹/스마트 뱅킹)을 통한 하나은행/타행 이체 시 수수료 면제 2. 하나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시 수수료 면제	**제 5 조 수수료 우대** (좌동) 1. 전자금융(인터넷/텔레뱅킹/스마트폰 뱅킹)을 통한 KEB하나은행/타행 이체 시 수수료 면제 2. KEB하나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시 수수료 면제	문구 변경 행명 변경
제 6 조 ~ 제 7 조 (생략)	**제 6 조 ~ 제 7 조** (좌동)	